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2021. 1. 21.(목)
제3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역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서 시·도 조례로 위임한 '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'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함(안 제7조의2제1항)

○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의2제2항~제5항)

○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의2제6항~제7항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○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**'충청북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'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**하고자 하는 것임

■ **최근 3년간 우리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**

연 도	전염병명	발생건수	살처분 현황		지원내역 (보상금)
2018년	합 계	59건	59농가	3,539두	9.6억원
	AI	1건	1농가	3,107수	1억원
	결핵	31건	31농가	152두	5.2억원
	브루셀라	17건	17농가	280두	3.4억원
2019년	합 계	56건	58농가	468두	44.44건
	구제역	1건	3농가	49두	2.8억원
	결핵	44건	44농가	405두	41억원
	브루셀라	11건	11농가	14두	0.64억원
2020년	합 계	38건	43농가	1,110,484두	37.17억원
	AI	2건	7농가	1.110,000두	20억원
	결핵	31건	31농가	479두	17억원
	브루셀라	5건	5농가	5두	0.17억원

■ **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**

- 협의대상 : 살처분, 유·사산, 이동제한 등의 보상 외에 추가 영업 손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 및 시군이 청구한 안건
- 협의절차 : 피해요구서 접수(시군) ⇢ 사실확인(시군) ⇢ 피해보상협의회(도)
  ※ 기존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급 요령과는 별개로 운영

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안 제7조의2제1항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8조의3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, 협의회가 가축

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, 피해보상에 대한 신청자와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음

○ 안 제7조의2제2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에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와 축산, 환경, 보건,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을 담보한 것으로 사료됨

○ 안 제7조의2제3항부터 제7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일부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한바, **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**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○ 법률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지만,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,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,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

○ 지난해 신설된 시행령에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축 소유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접수를 받아 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후 협의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**협의회는 피해보상금 지급 협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해 보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내부 운영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**하다고 사료됨